

<p>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2)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p> <p>3.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동수)</p> <p>○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에 있어 도시가스요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98.8.1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요금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p> <p>○아울러 위원 중 당연적인 공무원의 직위를 금번·조직개편으로 '98.8.12자 서울특별시직제규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p> <p>4.질의·답변 : 생략</p> <p>5.심사결과</p> <p>○원안가결(재적의원 12명,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p> <p>6.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업무의 위탁)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p>	<p>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p> <p>2.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3.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p> <p>4.한국지역난방공사</p> <p>5.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p> <p>6.국내외 에너지관련 전문업체 또는 기관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업자</p> <p>7.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감리</p> <p>2.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p> <p>3.시설분담금, 열요금 등의 징수</p> <p>제12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탁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조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업무이관시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다.</p> <p>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p> <p>-----</p> <p>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